

예 산 총 칙

201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565,171,761 | 16,955,153 |
| 일반회계 | 487,576,352 | 14,627,291 |
| 특별회계 | 77,595,409 | 2,327,862 |
| 공기업특별회계 | 75,706,112 | 2,271,183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5,718,612 | 771,558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49,987,500 | 1,499,625 |
| 기타특별회계 | 1,889,297 | 56,679 |
| 지하수특별회계 | 391,487 | 11,745 |
|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| 3 | 0 |
|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| 1,387,957 | 41,639 |
|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| 109,850 | 3,296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239,56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| | |
|---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3.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4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|
|---|---|